경기도 공고 제2023 - 680호

# 2023년도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『2023년도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0일

# 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 □ 사업목적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(이전) 1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, 초기 R&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
-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(신설)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
- □ 지원규모 : 10개 과제 내외(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 원 이내)
- 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- □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- □ 지워내용
  - **(연구소 신설)**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1년 이내인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  - **(연구소 이전)**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    - ※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신청·접수할 수 없음

# □ 추진절차

제안서 접수	사전검토		현장실태조사 (필요시)		평가위원회 개최	선행 특허조사	1	수정 사업계획서 제출	과제지원
GBSA	제안요건 및 유사기술 검토	7	사전검토 통과 기업 현장실태조사	-	계획 적정성, 기술성, 사업성 종합적 평가	특허성 유무 조사	7	심의 · 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	첫걸음 R&D 과제지원

※ 1차년도 사업 추진절차이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예정

### 2. 지원금액 및 기간·사업비

### □ 지원개요

- 공통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※ 세부사항은 "3. 신청자격" 확인
- **과제 지원기간** : **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** ※ 1차년도 연차평가(중간평가)를 통해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
- 과제 지원규모 : 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원

### ○ 지워내용

구 분	1차년도(2023년) 2차년도(2024년)				
	협약체결 후 1년	협약체결 후 1년			
지원기간	※ 협약체결은 평가 일정에 따르며 1차년도 최종(연차)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 여부 결정				
주관연구기관	[신설]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1년 이내인 도내 기업 [이전]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1년 이내인 기업 ※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				
참여연구기관	참여연구기관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				
지원규모	최대 1.5억원 내외/년 최대 1.5억원 내외/년				
선정범위	10개 과제 내외 10개 과제 내외				

- 1) 도내 기업 :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설치·운영 중인 자
- 2) 도내 기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지원·접수할 수 없음
- 3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는 사업 공고기간 내 제출한 인정서 설립신고일을 기준으로 함
- ※ 세부 지원 자격 사항은 하단 "3. 신청자격"확인

□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5%(현금+현물) 이상 부담

※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% ~ 20%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

주관연구기관 유형	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
중소기업	25%(현금 10%)이상
중견기업	25%(현금 15%)이상
대기업	25%(현금 20%)이상

### [참고1] 사업비 계상 예시

○ 도내 기업이 경기도 첫걸음 R&D기업연구소 지원사업으로 도 지원금 1.5억원을 신청할 경우

구 분		도 지원금	민주	합 계		
7	亚	도 시천금	민간현금	민간현물	(총 사업비)	
계-	산식	도 지원금≤(총 사업비×0.75)	민간현금≥(총사업비×0.1)	총 사업비-(도지원금+민간현금)	금) –	
금	액	150,000,000원	20,000,000원	30,000,000원	200,000,000원	
비	중	75%	10%	15%	100%	

# 3. 신청자격

- □ 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'공고일 (2023.3.20.)' 기준
- □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신청 자격기준
  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설치・운영 1년 이내 기준
  - ※ 연구소 인정서는 2022.03.20 ~ 2023.04.28.(공고마감일 기준) 기간 內 발급분에 한함

수행	기관별	자 격					
		[연구소 신설]	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				
	기업	[전구소 전설]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	② <u>공고기간 기준</u> ,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<b>신설하여</b> 설치·운영 <b>1년 이내</b>				
주관 연구기관		[연구소 이전]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	① <u>경기도 내</u>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 ② <u>공고기간 기준</u> , <b>타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로</b>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를 <b>이전</b> 하여 설치·운영 <b>1년 이내</b>				
		①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					
		② 연구소(1년) 설립일 기준 : 공고기간 기준 (2022, 03, 20, ~ 2023, 04, 28, 까지)					
	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도내 신규 설치 또는 도내 이전 기업					
		※ 한국산업기술진흥	-협회 발행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설립일 기준				
참여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 등	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※ 기업은 참여기관 지원 불가					
위탁기관	영리기관	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					
기국/1전	비영리 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·기업					

#### 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- ■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■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# □ 신청기간

-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3. 04. 24.(월) 9:00 ~ 04. 28.(금) 18:00까지
 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

# □ 신청방법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R&D관리시스템(http://pms.gbsa.or.kr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
  - 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참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  - ② 온라인 과제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  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  - ④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  - 사업계획서,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는 기업(관)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    - \*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    - ※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.)

# ○ 구비서류 목록

ан	시 시 명	해당	서류
연번	서 식 명	필수	해당시
1	사업계획서 1부 (소정양식,『서식1』참조)	0	
2	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(해당시)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공고일(2023.3.20.) 이후 발급분 제출	0	
3	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(해당시)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공고일(2023.3.20.) 이후 발급분 제출	0	
4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(https://www.rnd.or.kr/)에서 공고일(2023.3.20.) 이후 발급분 제출	0	
(5)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(해당시)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최근(2022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 준재무제표 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·세무사 확인본)'원 본 제출	0	
6	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※ 소정양식,『서식2』참조, 5.지원제한 ④참조	Ο	
7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소정양식,『서식3』참조)	0	
8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	0	
9	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,『서식4』참조)	0	
10	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소정양식, 『서식5』참조	Ο	
111	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소정양식,『서식6』참조)		0
12	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		0
13	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([참고4] 참조)		0
14	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		0

- 구비서류 제출 시, 파일별 **연번 부여**하여 제출( (예) 1. 사업계획서)
- <u>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</u>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바람

### 5. 지원제한

#### 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

- □ 전산등록 마감일[2023. 04. 28.(급)] 기준,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· 주관연구기관장·연구책임자·참여기관·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,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  -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
  -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 중 2020. 3. 20.(3년)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
    - ※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, 대학 및 연구소는 제외
  -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    -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    - ·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<u>복수의 과제를 접수</u>하는 경우 (202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포함)
    - ·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  - · 신청과제가 해당사업(분야)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    - ·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
  - ④ 이미 개발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
    -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완료하였거나 또는 이미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
    - 단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으로 처리하지 않음
   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
   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(성실, 불성실)"이나 "불성실 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
###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

#### ⑥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참여기관, 주관연구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

#### ⑦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 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 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\*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% 이상이어야 함.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  - \* (기관 기본사업)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,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
- ⑧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## 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구분	사전지원제외
검토기준	<ol> <li>기업의 부도</li> <li>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※ 단, 시설투자 등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(추가 증빙 제출 필요)</li> <li>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
조치	· <u>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의 경우 "사전지원제외"</u>

# 6. 기술료

- □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참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□ 다만,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"불성실수행"이 아닌 경우,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.
  - ※ 기술료율 : 총 매출액이 과제 종료 후, 3년 이내 道 지원금의 50배 증가시, 총 지원금의 50% 납부
    - ex) 성공기술료(지원금 1.5억 기준) : 매출액 75억 원 증가시, 75백만 원 납부

#### [참고3]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

- 징수대상 : 과제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(회계연도 기준)의 기간에 해당기업 총 매출액이 道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
- 기술료율 : 도 지원금의 50%
  - ※ 총 매출 증가액 산정 기준: 종료연도 이후 3개년 후 당해 12월 말 매출액-종료 당해연도 말 매출액 (해당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)

  - ※ 기술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40%를 감면 ※ 사업수행 결과 "우수"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30% 감면

### 7.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

### □ 평가기준

- 사전 적격심사
  -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, 과제 중복성, 제재사항 등
  - 현장조사(필요시) :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
- 발표평가
  - 평가내용 : 사전 적격심사(서류 및 현장)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
  - 평가항목 및 배점 : 개발계획의 적정성(15점),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(30점), 목표달성 가능성(25점),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(30점), 가산점(최대 5점)
- 과제선정 :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
  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- 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 취소

#### [참고4]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

- 가산점 적용대상
  - ① 5점
  - 경기도가 선정한 '유망 중소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  - ② 2점
  - 경기도가 선정한 '일자리 우수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  -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(GRRC)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
  - ③ 1점: 기타 경기도지사가 '인증(지정)'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
  - ※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
- 가산점 적용기준
  -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※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
  - ② 가산점은 <u>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</u> 적용
  -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[2023. \*. \*\*.(금)]을 기준으로 함
  - ④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(최대 5점)

### 8. 기타 공지사항

# □ 사업 설명회

- 일시/장소 : 2023. 4. 05.(수) 14:00 /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B2 국제회의장 -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(삼평동)
- 내용: 2023년도 경기도 R&D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및 경기도 기술 개발사업 등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계획,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 접수요령 등
- 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 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 -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# □ 위탁기관(해당시)

-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, 해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되,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% 이내여야 함.
  - ※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, 재위탁 불가

# 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참여)은 도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.
  - 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 포함하여 적용
- 발급수수료는 연구비(직접비-연구개발비)로 계상

# □ 기타사항

-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.
-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.

# □ 과제선정 취소

-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  - PMS(R&D관리시스템)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 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 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
  -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 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 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  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- 경기도 R&D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

# □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

○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(사업비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.

# □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

-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
  - ※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- 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「경기도 기술개발 사업」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
 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(경기도 고시)」
  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라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(경기도 고시)」 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

### 9. 문의처

- □ 사업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부문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☎ 031) 776-4852 / ☞ rnd@gbsa.or.kr
  - 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- □ **온라인 전산 접수** (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, 호환성 등): 031-776-4857
- 서 식: 1. 사업계획서
  - 2.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
  - 3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
  - 4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  - 5.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  - 6. 참여의사 확인서
- 별 첨 1. 사업계획서 작성요령
  - 2. 산업기술분류표
  - 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. 끝.